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고시 개정(안)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 표시 간소화 등 전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작성,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

(제25조, 별지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서식)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보고, 시정·수거 등 조치 계획 및 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해외 제조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방법 간소화

마. 전과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 전과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과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의11”을 “제58조의11, 제58조의13”으로, “제77조의8”을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77조의16”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적합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자기적합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을 “별표 1”로, “1)”을 “1) 중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을 “별표 1”로, “기자재”를 “기자재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과 2), 라목”을 “1)”로, “[2]부터 5)까지”를 “[2]부터 6)까지”로, “[①부터 ④까지]”를 “[①, ②, ④]”로, “2)와 3)”을 “2)”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비치한다.”를 “보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비치하지”를 “보관하지”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자기적합확인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공개)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자기 시험성적서
 - 나.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라. 영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3.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2호

4. 제11조제2호 및 제18조제4항제2호의 시험성적서(다만,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동일한 기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적합확인을 하려는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로 시험하였음을 시험성적서를 제공한 자로부터 확인받고 해당 시험성적서로 자기적합확인함에 동의 받은 서류(영 제77조의3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중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제1항 제2호다목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중전의 제12조) 제2항제1호 중 “제11조”를 각각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 앞에 장 번호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의 제목 “(변경사항의 신고)”를 “(변경사항의 신고 등)”으로 하며, 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제2호”를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8호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제11조제2호의 시험성적서(제17조제1항의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인 경우에 한하며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 앞에 장 번호 “제6장”을 “제7장”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 기자재”를 “적합등록 기자재, 자기적합확인 기자재”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8조제3호”를 “제20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 제3항제6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1조) 앞에 장 번호 “제7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중전의 제21조의2)제1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자파적합성”을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선 및 무선통신”을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으로, “정보기기”를 “멀티미디어”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적합 보고 등) ① 영 제77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

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부적합 보고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를 보완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7조의14제4항에 따라 부적합 보고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중전의 제23조) 앞에 장 번호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3조) 제1항 중 “영 제77조의5제2항”을 “영 제77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중전의 제25조)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6조) 제1항 제1호다목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4조”를 “제27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5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다목 중 “제16조제1항”을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1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0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7조)의 제목 “(대리인의 지정)”을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13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란 중 “지정 시험기관”을 각각 “적합등록”으로 하고, “자기시험”을 각각 “자기적합확인”으로 하며, 제1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 제1호에 다음을 신설하며, 같은 란 제2호에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으로 한다.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강도			
라. 조명기기류	1) 형광등 기구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LIT11
	2) LED등 기구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LIT12
	3) 일반등 기구류	○ (현행과 같음)	○			○	LIT13
		○ (현행과 같음)	○			○	LIT14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 (현행과 같음)	○			○	IVT11
		○ (현행과 같음)	○			○	IVT12

	5) 램프류	o (현행과 같음)	O			<u>O</u>	LIG11
	6) ~ 8) (현행과 같음)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별표 4] 제목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는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4-00호,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 등록’이라 한다) 대상기자재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 3조제1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② ~ ⑦ (생략)
- ⑧ 제7항의 단서에 따른 회로도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성적서의 제출은 제16조제1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 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

자기적합확인 -----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제30조-----

- ② ~ ⑦ (현행과 같음)
- ⑧ -----

----- 제18조제1항-----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 3조제2호-----

1. · 2. (현행과 같음)
3. ----- 제30조-----

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 ⑤ (생략)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
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
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
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
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 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적합등록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 ① -----

----- 보관-----.

1. (현행과 같음)

2. -----

가. 별표 1 -----

----- 1) 중 제3조제2
호-----

나. 별표 1 -----

----- 기자재 중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
자재 -----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기 시험성적서(제3조제 3호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마. (생략)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제11호 가목 2) ①, 나목, 다목 1)과 2), 라목, 바목 [2)부터 5)까지], 사목 1) [①부터 ④까지], 사목 5) 중 전기충전기, 아목 2)와 3)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 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5. (생략)

6. 회로도 :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과 '슬롯형 착탈식 유선

<삭제>

마. (현행과 같음)

바. -----

----- 1)---
----- [2)부
터 6)까지]----- [①,
②, ④]-----
----- 2)-----

4. 5. (현행과 같음)

6. ----- 제3조제2호---

<신 설>

확인 선언서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자기 시험성적서

나.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라. 영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

를 적용한 기자재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2호

4. 제11조제2호 및 제18조제4항 제2호의 시험성적서(다만,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동일한 기자재임을 증명하는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생략)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 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4. (생략)

③ (생략)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원

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8. ----- 제30조-----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 제13조-----

② -----

1. 제13조-----

2. ----- 법 제58조의2 제9항-----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

----- 제14조-----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④ ~ ⑥ (생략)

제5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5조 (생략)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법 제58조의2제9항 -----

2. 제14조제3항-----

3.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8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17조제1항-----

<신 설>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
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
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
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

다. 이 경우 제12조제8호에 따
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
확인 선언서

2. 제11조제2호의 시험성적서
(제17조제1항의 적합성평가 기
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인 경우에
한하며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변경사항은 변경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
----- 제18조제1항-----

② ----- 제17조제2항 -----

하여야 한다.

제6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카목에 따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나. (생략)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 ① (생략)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

제7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20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적합등록 기자재,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

가.·나. (현행과 같음)

제21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 ① (현행과 같음)
- ② -----

한다.

1. 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3.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5. (생략)

⑤·⑥ (생략)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①·② (생략)

③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제20조-----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3호 -----

5.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6.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④ (생략)

제7장 조사 및 조치

제21조 (생략)

제21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시험 방법 등) ① 원장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부적합 판단기준은 전자파적합성의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의 제품군별 시험규격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적

6. ----- 제30조-----

④ (현행과 같음)

제8장 조사 및 조치

제23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시험 방법 등) ① ----- 제24조 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 제23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

용하여 판단한다. 다만, 유선 및 무선통신 기자재의 경우에는 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 시험 방법에서 정한 통계적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 . ----- 제4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한 ----- 멀티미디어-----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부적합 보고 등) ① 영 제77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부적합 보고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를 보완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7조의14제4항에 따라 부적합 보고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

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략)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제9장 보 칙

제26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①
영 제77조의5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② (생략)

<신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 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가.·나. (생략)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서의 재발급) -----
----- 제15조-----

제29조(처리기간) ①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8조제1항-----
-----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

라. 제27조-----

마.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 제28조에 따른 수입 기자
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19조에 따
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생략)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
인증 변경신고

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
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2
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일
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 30일 이내 처리 :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 (생략)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
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
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

마. 제28조-----

바. 제31조-----

2. ----- 제21조-----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8조제1항-----

다. 제18조제1항-----
-----제17조제2
항제3호-----

라. 제22조제3항-----

4. ----- 제13조-----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13에 따른 국내대리
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0조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신청

6.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7.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 설>

<신 설>

제28조 · 제29조 (생략)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 제32조 (현행 제28조 및 제29조와 같음)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머. (생 략)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생 략)						
※ 비고 1. (생 략)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거. (생 략)						
※ 비고 o (생 략)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러. (생 략)						
※ 비고 o (생 략)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2.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 비고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 비고 o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 비고 o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파. (생 략)						
※ 비고 1. ~ 5. (생 략)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나. (생 략)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다. (생 략)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 나. (생 략)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 략)	적합 인증	적합등록			
			지정 시험 기관	자기 시험		
가. (생 략)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7.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8.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9.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10.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생략)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시험		
			지정 시험기관	자기 시험			
가. ~ 하. (생략)							

11. 전자과장해를 주거나 전자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자기 시험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가. ~ 다. (생략)							
라. 조명기기류	1) 형광등 기구류	○ (생략) ○ (생략)	○	○			LIT11
	2) LED등 기구류	○ (생략) ○ (생략)	○	○			LIT12
	3) 일반등 기구류	○ (생략)	○	○			LIT13
		○ (생략)	○		○		LIT14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 (생략)	○	○	○		IVT11
		○ (생략)	○			○	IVT12
	5) 램프류	○ (생략)	○	○	○		LIG11
6) ~ 8) (생략)							
마. ~ 카. (생략)							

※ 비고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신설>
 - <신설>
- 카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식별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생략)

[별표 4]

사용자 안내문(제10조 관련)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 적합확인			
					가. ~ 하.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기기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자기 적합확인	
				적합등록	지정 시험기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조명기기류	1) 형광등 기구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LIT11
	2) LED등 기구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LIT12
	3) 일반등 기구류	○(현행과 같음)	○	○			LIT13
		○(현행과 같음)	○		○		LIT14
	4) 안정기, 컨버터 및 램프 제어장치	○(현행과 같음)	○	○	○		IVT11
		○(현행과 같음)	○			○	IVT12
	5) 램프류	○(현행과 같음)	○	○	○		LIG11
6) ~ 8) (현행과 같음)							
마. ~ 카. (현행과 같음)							

※ 비고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

- (현행과 같음)

[별표 4]

사용자 안내문(제10조 및 제12조 관련)

1. ~ 2. (생략)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3조 관련)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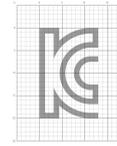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합성평가표시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QR코드 등)를 사용하여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크기, 디자인 등으로 기자재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 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안 요령, 색채 등 표시기준과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관련 별표 6을 준용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모델명

3)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

<기자재의 식별부호 형식 >

<기자재의 관리번호 형식 >

R	-X	S	-	A	B	C	-	X	X	~	X	X	A	B	C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④			⑤					
방송통신기기 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5) 기자재 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
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
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
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
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
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
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
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
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
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다.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포함한다]는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사용자설명서 또는 별지 등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목 4)부터 7)까지의 적합성평가 표시사항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를 기자재와 같이 제공할 경우 표시한 것으로 본다.

2)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라.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만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기자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관리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관리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 (“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 또는 “http://www.rra.go.kr/xxxx/관리번호”)을 링크할 수 있다.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URL은 시스템 구현시 확정)

라.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식별부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 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

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 (e- 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 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 평가 정보를 수록 하는 정보 수록 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 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 (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 (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 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3) 제2호 다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다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자과합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 (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 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
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관리번호)를 Q

R코드의 내부 또는 Q
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
시하여야 한다.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
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 2. (생략)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
제2항 관련)

1. ~ 2. (생략)

[별표 6]

소비자 안내문

(제20조제3호 및 제4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3조
제2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 별지 1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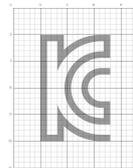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합성평가표시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QR코드 등)를 사용하여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크기, 디자인 등으로 기자재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안 요령, 색채 등 표시기준과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관련 별표 6을 준용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모델명

3) 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

< 기자재의 식별부호 형식 >

R	-	X	S	-	A	B	C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 기자재의 관리번호 형식 >

A	B	C	-	X	X	~	X	X
④				⑤				
신청자 정보식별				기자재 식별				

-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T'로 표기
-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5) 기자재 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다.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포함한다]는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사용자설명서 또는 별지 등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목 4)부터 7)까지의 적합성평가 표시사항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를 기자재와 같이 제공할 경우 표시한 것으로 본다.

2)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라.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만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기자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기자재의 식별부호(관리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관리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식별부호(관리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식별부호>” 또는 “<http://www.rra.go.kr/xxxx/관리번호>”

호”)을 링크할 수 있다.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URL은 시스템 구현시 확정)

라.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자재의 식별부호와 함께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 소프트웨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디스플레이 방식 :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QR코드 방식 :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룩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영 제77조의5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표시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 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3) 제2호 다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

4)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 제2호 다목의 “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정보수룩방식의 QR코드에 한함),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사용자 설명서 등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공통 요구조건

- 가)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 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2)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

- 가)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가입자식별모듈(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 설명서,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

- 가)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 나)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관리번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 하, 좌,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2)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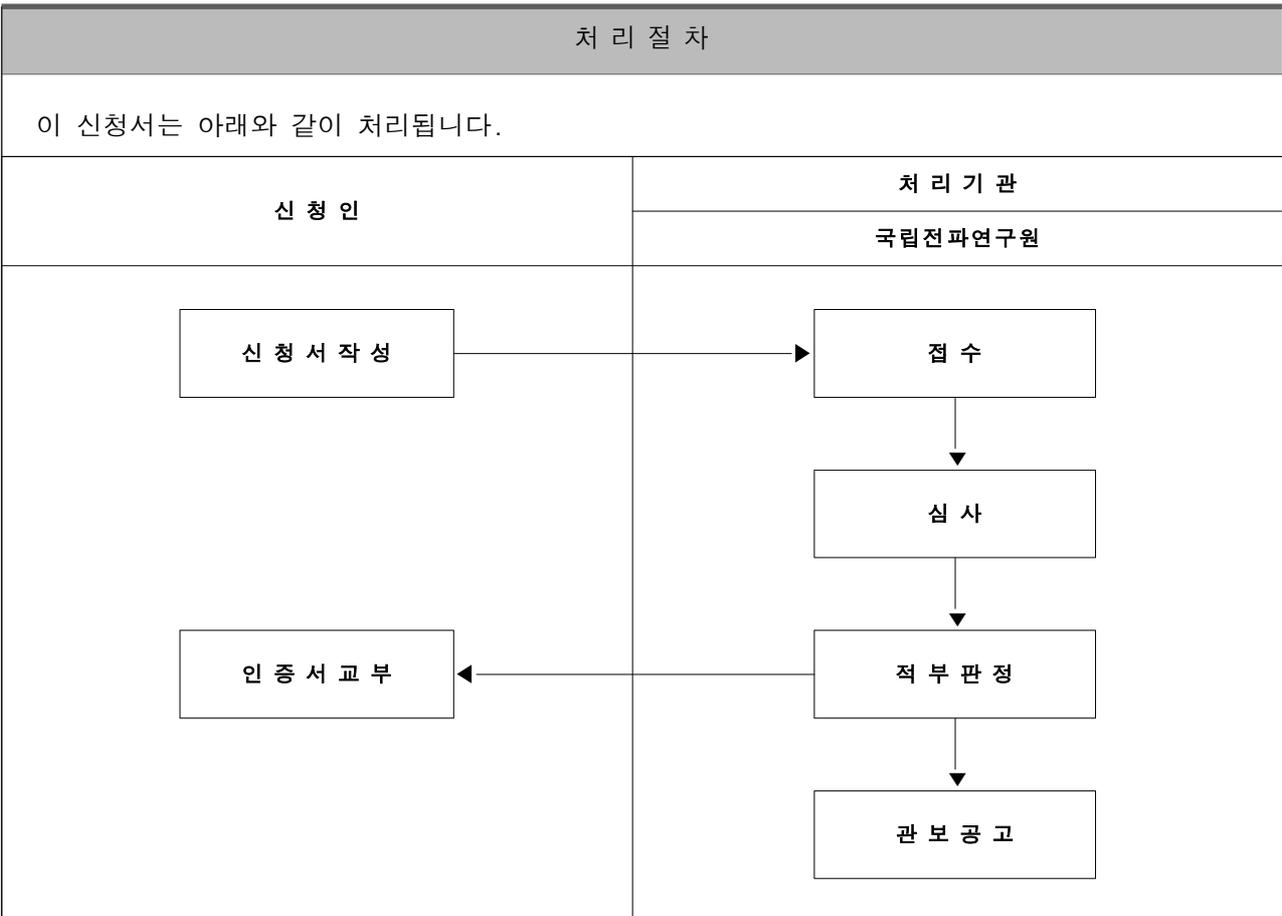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	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대한 사항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신 청 기 자 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무선기자재의 경우 기재(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등 록 방 식	<input type="checkbox"/>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_____)		
	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input type="checkbox"/>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input type="checkbox"/> 예 (시험기관명 : _____ 시험접수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시 험 성 적 서 정 보	시험기관명 :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	기술책임자 :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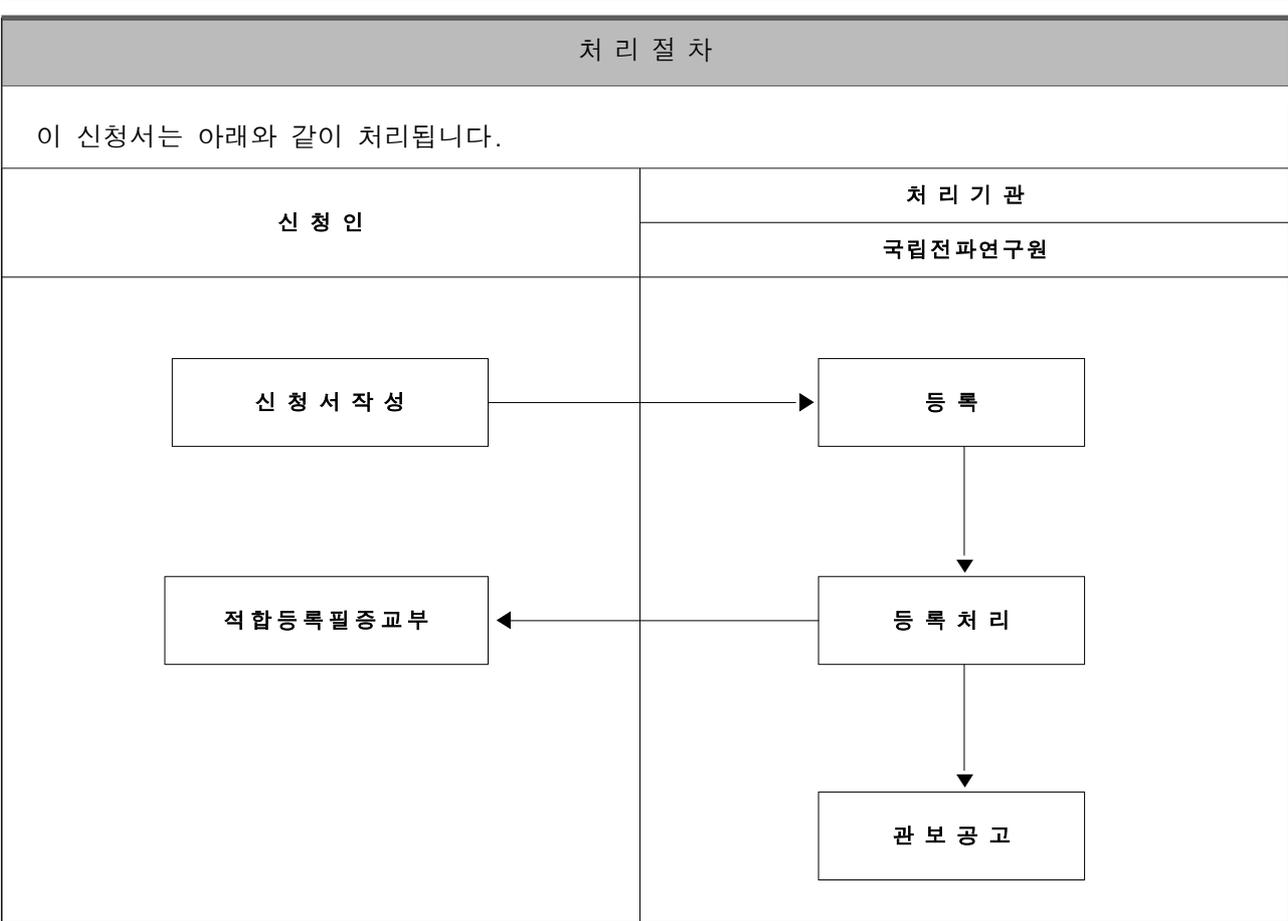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별표 1 제11호 가목,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및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보관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업무담당자	(전화)	기자재명칭 (제품명칭)	※ 뒤쪽 참조
	제 품 식 별 부 호		구성품(모들) 식 별 부 호	※ 뒤쪽 참조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뒤쪽 참조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뒤쪽(구비서류 작성방법) 참조		
	기 본 모 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모 델 명
		외관사진		외관사진
	제 조 자		제조국가	※ 파생모델이 둘 이상인 경우 별도첨부 가능
	시험기관명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기술책임자	

적 합 성 평 가 정 보	적 합 성 평 가 적 용 기 준	적 합 성 평 가 결 과	보 관 서 류 의 구 비 현 황	등 록 기 기 보 완 유 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삭제>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은 별표 1에서 정한 명칭 외에 통상적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한 기자재 명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 : 세탁기(Wi-Fi형), 블루투스)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구성품(모듈) 식별부호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모듈(무선 송·수신용 부품,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 완구용 모터)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에 구성품(모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기재합니다.

7.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 기기부호는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기기부호를 참고합니다.
- 추가 기기부호는 무선기자재가 추가되는 경우에 필히 기재하며 다수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포함)
- 형식기호는 무선기자재의 경우에 기재하며 별표 7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따라 기기부호와 주파수를 필히 기재합니다.(예 : LARN8-2402/2480+2412/2472+LARN5-5180/5220)

8. 기본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9. 파생모델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하고, 외관사진을 첨부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와 제2조제1의2호에 정의된 제조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신 청 기 자 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input type="checkbox"/> 전자파강도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input type="checkbox"/> 예 (시험기관명 : _____)		시험접수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아시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Applic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기부호/추가 기기부호 <i>Equipment code/Additional Equipment cod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잠정인증번호 <i>Interim Certific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인증연월일 <i>Date of Certification</i>	
유효기간 <i>Validity</i>	
허용조건 <i>Permission Condition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9,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년(Year) 월(Month) 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8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	
<p>※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또는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 합 성 평가사항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전파법시행령 제 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상 기기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p>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가
	수 량		금 액
④ 통 관 세 관 명		⑤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면제확인 번호		⑦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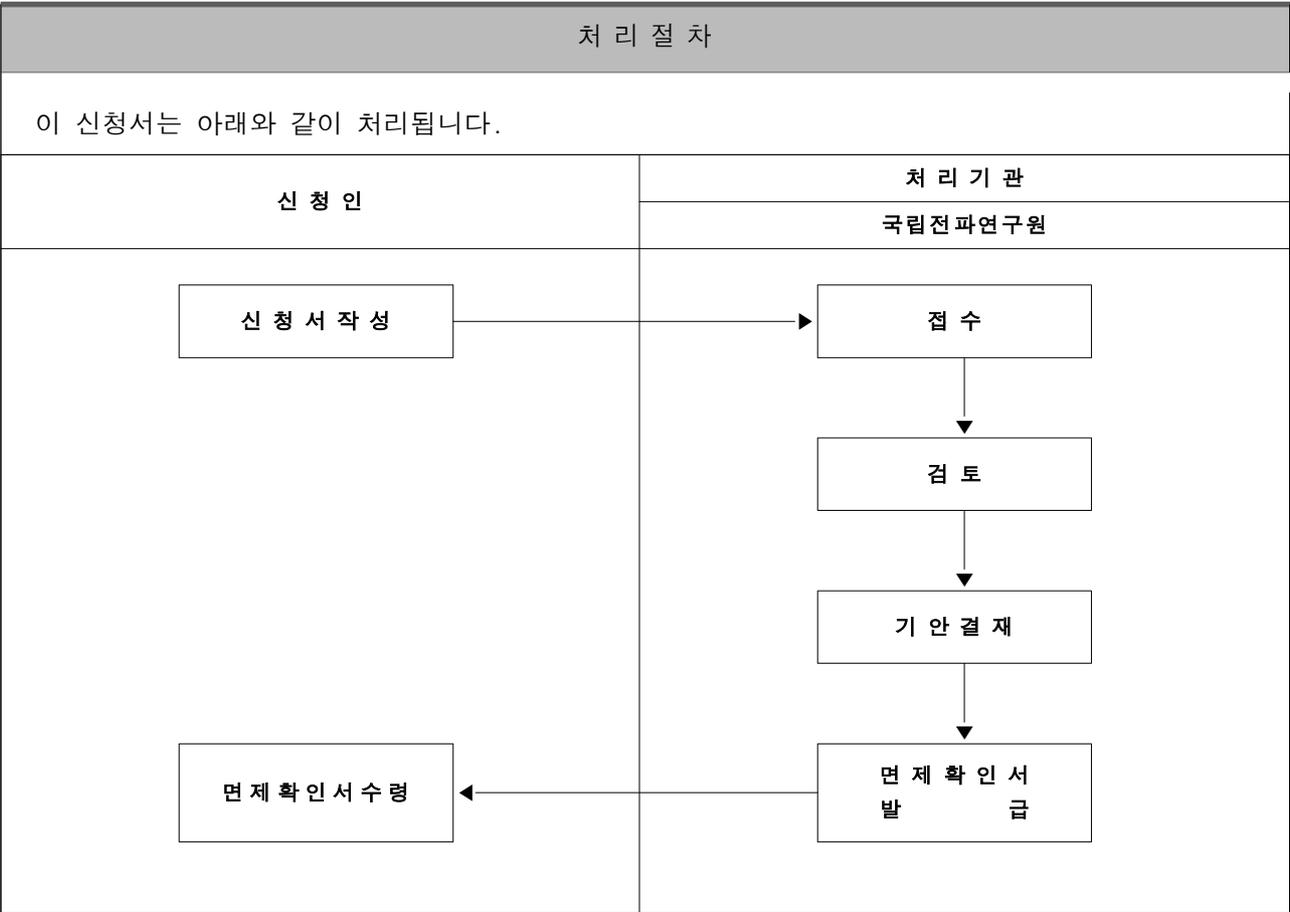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p>※ 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작성방법

-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20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
적합성평가확인
]
신청(확인)서

[
]
사전통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 수입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소	(우)			
⑤ 수입화주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 자 재 명 칭 (거 래 품 명)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 증(등 록, 관 리) 번 호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수 량	
⑫ 제 조 자		⑬ 제 조 국 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xx.xx.>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해 지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 조 자 명

해 지 사 유	<input type="checkbox"/> 제조중단 <input type="checkbox"/> 수입중단 <input type="checkbox"/> 판매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 타 사 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필증)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xx.xx.>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인증서(등록필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재 발 급 내 용

적합성평가 구분	인증(등록) 번호	인증(등록) 일자	기자재 명칭	기본모델명	제 조 자 명
재 발 급 사 유		<input type="checkbox"/> 분 실 <input type="checkbox"/> 손 상 <input type="checkbox"/> 기 타			
기 타 사 항					

[제28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잠정인증서, 적합등록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동일기자재 적합인증(적합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기 자 재	적 합 성 평 가 구 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적합등록 <u>보관</u> 서류 사본 보관여부	[] 보 관 [] 미보관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	상 호 명		인 증 (등 록) 번 호	
	기 자 재 명 칭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인 증 (등 록) 연 월 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 <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 파 수 포 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1부. 2.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1부.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제22조제3항제2호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서류

2.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

3.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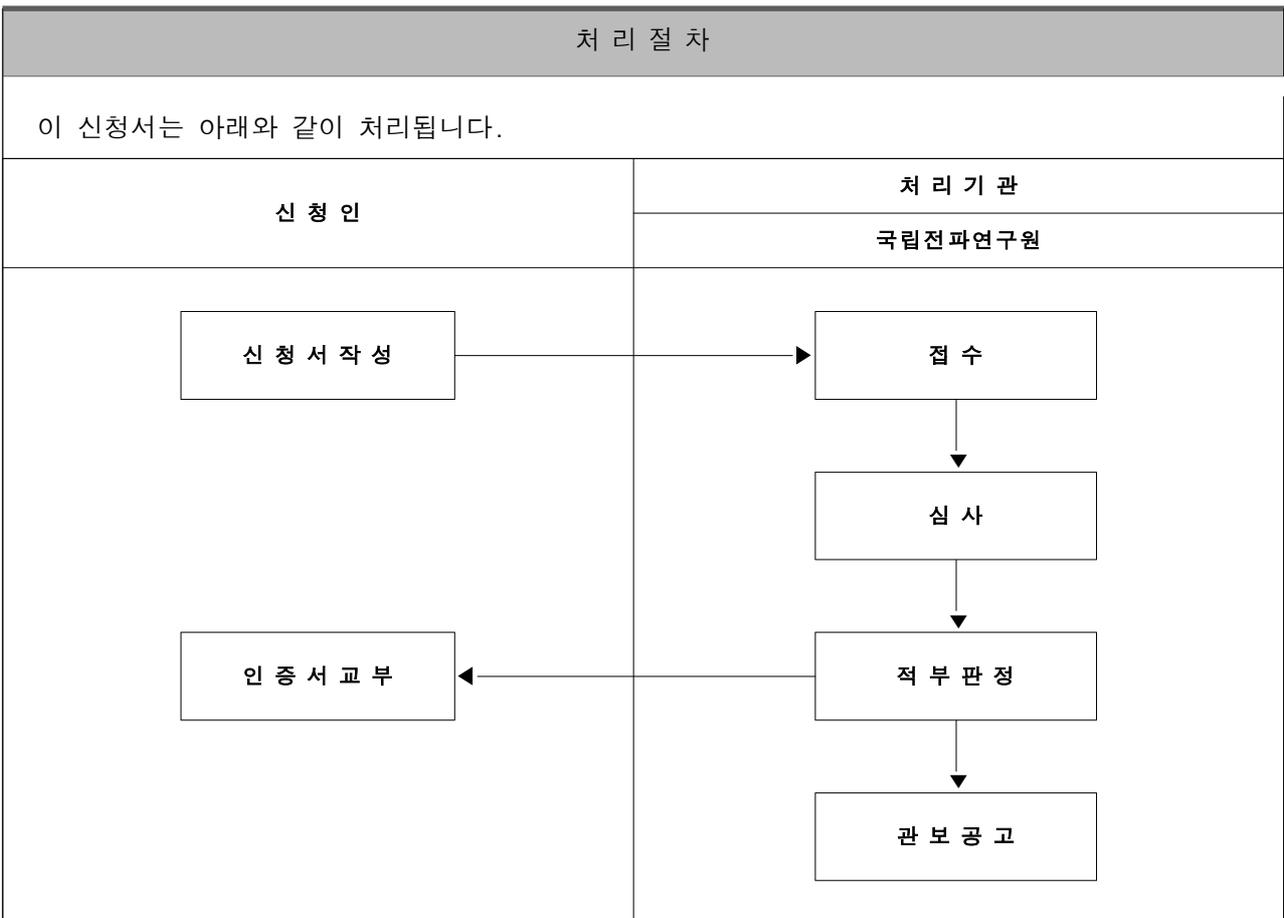
4.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타

- o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보관서류](#) 사본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적합등록 [보관서류](#) 사본 보관여부'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동일기자재 (신청기자재)	적 합 성 평 가 구 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기 자 재 명 칭		기본모델명	
	파 생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동의자 (선인증자)	상 호 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합성평가 사항	보관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적합등록의 경우 신청자에게 동일기자재에 대한 <u>보관</u> 서류 사본 제공여부 [] 제 공 [] 미제공		
	상 호 명		인증(등록)번호	
	기 자 재 명 칭		기본모델명	
	파 생 모 델 명		인증(등록) 연월일	
	기 기 부 호		추 가 기 기 부 호	※ 추가되는 무선기자재 기기부호를 필히 기재<다수인 경우 (,)로 구분>
	형 식 기 호 (주파수 포함)	※ [별표 1] 제4호 및 제5호 기자재 중 [별표 7] 2호에 따라 형식기호 항목이 기자재(기기부호)만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기기부호와 함께 주파수를 필히 기재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위 신청자 및 동의자는 아래 유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동일기자재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동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를 한 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자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 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합등록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u>보관</u>서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미 제공시 적합성평가 신청 불가) 3.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원장은 적합등록한 동일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동일기자재 적합 등록자에게 해당 기자재에 대한 <u>보관</u>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식별부호 (관리번호)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		판매수량	
부적합 발생일			부적합 발생장소	

부적합 내용

부적합 원인 분석내용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전파법」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적합 기자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 조치계획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 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식별부호 (관리번호)			모델명	
제조기간 (수입기간)	~		제조수량 (수입수량)	
판매기간	~		판매수량	
유통재고			자체재고	

1. 유통·판매기기 수거 여부

1) 유통·판매기기 수거완료 또는 진행여부 (21.07.00. 까지 수거완료 또는 수거예정)

○ 수거완료 : R-C-ABC-DEF (모델 : abcd)

○ 수거 진행 중 : R-C-ABC-DEF (모델 : abcd), 21.07.00 까지 완료예정

2) 유통·판매기기 수거 세부 내역 및 자료 제출

(1) R-C-ABC-DEF (모델 : abcd) 수거내역 (총 수거량)

○ 자체재고 00건

○ 유통수량 00건을 전량 수거 또는 예정

- (취가나다 업체의 판매대기 수량 (00건)

- 온라인 판매대기 수량 (00건)

(2) 수거 근거자료 제출 : 도·소매 업체에 보낸 문서사본, 수거한 제품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

2.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기간 :

1) 적합여부 확인완료 또는 진행 중 (21.07.00 까지 완료 예정)

2)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확인 내역

○ 인증/등록번호 (모델명)/ 적합(또는 부적합)

3)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제출

3. 소비자 고지, 기간 및 수거에 따른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보상

1) 소비자 고지 및 기간 :

(1) 소비자 대상 고지

- 개별통지 (문서,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가 원칙. 개별통지가 어려울 경우 자사 홈페이지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
- 고지 문구 예시

◆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한 경우

- 금번 부적합 기기(인증/등록번호, 000모델)는 안전성 검증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제품으로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부적합인 경우

- 당사는 아래의 제품을 수거하고자 합니다. 동 해당제품을 구매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①업체명 ②기자재 정보(인증번호, 모델명, 기자재명칭, 인증연월일 등), ③수거 사유, ④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⑤수거에 따른 보상방안 안내 (교환, 환불)

※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 안내 (무상수리, 교환, 환불)

-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

예시) 구입 후 00년 내 기자재는 전액 환불 또는 동일성능 이상 기자재로 교환, 구입 후 00년이 지난 경우 무상수리, 정액감가상각 + 00%를 가산한 환불 등

(2) 소비자 고지 기간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 할 수 있음.

2) 수거에 따른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 보상 :

(1)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 (00개)에 따른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 예정

(2)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 조치 세부 일정

- 1주 ~ 0주 까지 무상수리, 교환, 환불 예상 (0개)
- 0주 ~ 0주 까지 무상수리, 교환, 환불 예상 (00개)

「전파법」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4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 시정·수거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	--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

보고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대리인 (지정된 경우에 한함)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대표 전자우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기자재의 식별부호 (관리번호)			모델명	

적합성평가 기술기준 적합여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통해 검증

고지 실적

- 고지기간
- 고지방법(유통사/구매자)
- 고지내용(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따른 내용)

수거 등 내용 및 실적

- 제조량(수입량) : (제조(수입)기간 :)
- 사업자 재고 :
- 유통사 재고 :
- 판매량 : (판매기간 :)
- 수거량 : (사업자 재고 : , 유통사 수거 : , 구매자 수거 :)
- 폐기량 :

수거 등을 하지 못한 기자재에 대한 조치 계획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실적

조치기간(조치계획서 제출일부터 수거 등의 이행일까지)

증빙서류

「전파법」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4제4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또는 위임자)

(서명 또는 인)